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9. 25.

기획재경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디지털정보과)
- 제출일자: 2024. 9. 12.(목)
- 회부일자: 2024. 9. 12.(목)
- 검토기간: 2024. 9. 12.(목) ~ 9. 20.(금)

## 2. 제안이유

- 디지털 대전환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은 우리 생활 주변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 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의 지역주민이 디지털 기술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기반 체험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과기부 주관 2023, 2024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달서디지털체험센터를 2023년 11월에 개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달서디지털창작센터를 12월에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조성한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 위치: 달서디지털체험센터(상화로 272(도원동), LH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달서디지털창작센터: 서당로 30(신당동), 舊 신당중학교 1층



#### - 규모 및 공간구성

시 설 명	면적(m <sup>2</sup> )	공 간 구 성	비 고
달서디지털 체험센터	681.31	교육공간(30석), 디지털 제작실(장비실), 체험공간, 실감미디어 공간 등	
달서디지털 창작센터	588.30		소계
	358.30	교육공간(30석), 체험공간, 사무실, 창고	교실동
	230.00	대형 스튜디오, 소형 스튜디오, 체험 스튜디오	조리실

※ 위탁금액: 연간 330,000천원 정도

※ 인력운영: 4명(기간제 제외)

#### 나. 위탁개요

##### ○ 위탁사무 내용

- 시설(2개소) 및 장비 운영·관리 전반
- 로봇,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체험 프로그램 및 디지털 제작 장비 교육
-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및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수요 발굴을 통한 필요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2025. 1. 1.~2026. 12. 31.(2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4. 관련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0조

####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IT·로봇 분야 전문가(관련분야 교수)에게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사전에 거쳤으며, 로봇·인공지능 등 고도의 디지털 분야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 본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체험·교육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관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체험교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개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의견】

**최홍수 교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로봇공학전공]

검토기준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관련 대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전문지식 및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li> </ul>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더라도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운영 조례를 통하여 공공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도록 운영 가능</li> </ul>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관련 전문지식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한 민간에 의한 운영을 통하여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li> </ul>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민간 위탁운영 전문가 또는 운영 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디지털체험교육시설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채용이 가능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를 인력풀로 운영할 수 있음</li> </ul>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하고 객관적인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운영 조례 및 민간위탁 조례를 통하여 위탁 종료 시에 명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li> </ul>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명확한 운영 조례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보고 또는 실적, 정산 보고서 등을 통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li> </ul>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인공지능, 디지털 등의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의 공개경쟁을 통하여 효율적 운영비 지출 및 주민 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기대됨.</li> </ul>

□ 이은미 교수(계명대학교 IT융합교육센터)

검토기준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고도의 IT 전문성과 장비 유지보수 및 최적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 기관 위탁운영 시 더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며, 구청은 관리와 감독에 집중 가능하여 시설 운영 효율성 극대화</li> <li>◦ 구청이 직접 운영 시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에 많은 시간과 자원 소요가 예상됨</li> </ul>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 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하며, 구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li> <li>◦ 디지털 시설 운영에는 정보 보안과 서비스 안정성이 중요하며, 민간 업체의 최신 보안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스템 보안성 유지</li> </ul>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을 통해 인건비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가능</li> <li>◦ 전문인력의 효율적 확보와 활용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프로그램 질적 향상 가능</li> </ul>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을 신속·유연하게 채용 가능하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력풀을 효과적으로 구성 가능</li> <li>◦ 민간기관은 최신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더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운영 가능</li> </ul>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 성과평가를 실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가능</li> <li>◦ 연간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선 가능</li> </ul>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하고, 정기적인 실적 및 정산 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가능</li> <li>◦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 수시 방문 지도·점검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확인</li> </ul>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라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경쟁하며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음</li> <li>◦ 민간기관들은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li> </ul>

## 【관 련 조 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서디지털체험센터
2. 달서디지털창작센터
3. 달서메타버스체험관

제5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

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
  3. 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